

피지(Fiji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6년(적립금고)
- 현행법 : 2001년(사회보장); 2011년(적립금고); 2011년(적립금고규제), 2012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 - ※ 피지 국가적립금고(Fiji National Provident Fund, FNPF)는 두 가지의 개인 계좌를 각각의 가입자에게 제공함; 퇴직이 우선적 목표인 보존 계좌(Preserved Account)(첫 주택 구매자들은 퇴직 전 잔고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음); 및 퇴직 전 교육, 의료, 실업, 주택 및 기타 승인된 비용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일반 계좌

3 적용대상

- 적립금고 : 근로하고 있는 피지 국민, 1971년 11월 1일 이후로 고용된 공무원 포함.
 - 자영자, 가내근로자, 학생, 피지에 고용된 해외 근로자, 비공식부문의 근로자에게는 임의 적용
 - 예외 : 주 사업 공간이 피지 이외인 사용자의 근로자
 - 1971년 11월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공무원연금제도에 지속가입을 선택한 공무원, 특정 군 및 경찰 관계자에게는 특별 제도 적용
- 사회부조 : 궁핍한 피지국민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적립금고 : 임금의 8%; 매년 가입자의 적립금고계좌(특별 사망급여)에서 F\$35가 공제됨. 임금(가입자와 사용자가 같이 또는 각자 납입 가능)의 최대 12%까지 추가적인 임의 납부 가능함
 -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합이 최댓값은 임금의 30%임
 -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합 중, 보존 계좌에 70%, 일반 계좌에 30%가 할당됨
 - 보험료는 고용의 종류에 근거하여 매일, 매주, 격주, 혹은 매달 납부됨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적립금고 : 매년 최소 F\$84의 보험료; F\$35가 매년 가입자의 적립금고계좌에서 공제됨 (특별 사망급여)

- 보험료 납부계산을 위한 소득 상한선은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적립금고 : 임금지급총액의 10%; 66세 이상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없음.
임금(가입자와 사용자가 같이 또는 각자 납입 가능)의 최대 12%까지의 추가 임의납부 가능함
-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합의 최댓값은 임금의 30%임
-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 합 중 보존 계좌에 70%, 일반 계좌에 30%가 할당됨
- 보험료는 고용의 종류에 근거하여 매일, 매주, 격주, 혹은 매달 납부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적립금고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함
- 사회부조 : 총액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급여(적립금고)
 - 보존계좌 : 55세; 지난 3년 간 실업의 상태이며 계좌 잔고가 F\$5,000이하인 경우 50세; 영구 출국자일 시 연령 무관
 - 부분 회수 : 55세 이하의 가입자는 첫 주택 구매 자금을 위해 보존계좌에서 기금 회수 가능함
 - 일반계좌 : 퇴직 전 교육, 의료, 실업, 주택 및 승인된 비용에 대하여 기금 이용 가능함
- 노령사회연금(사회연금제도(Social Pension Scheme[SPS]), 사회부조) : 65세, 현재 적립금고급여, 빈곤급여, 혹은 정부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며, 이전에 적립금고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.

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적립금고) : 등록된 의사가 보장한 완전한 근로활동 불능자로 판단되어야 함.
 - 피지국가적립금고위원회에서 지정한 의학 위원회가 적립금고가입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금고) : 가입자의 사망 시 미망인(홀아비) 혹은 지명 유족들에게 지급됨
- 사망보조금(특별사망급여) : 가입자 사망 시 지명 유족 혹은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급여(적립금고)

- 보존계좌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지급총액 + 경과이자 - (보존 및 일반 계좌에서의 이전 인출금)>에 해당하는 잔액이 지급됨. 이 금액은 일시금; 단생 또는 연생연금; 5, 10, 15년의 기간 동안의 정기연금;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지급될 수 있음. 종신연금 지급률은 가입자의 퇴직시점 연령에 달려 있음. 종신연금은 최대 5년까지 보장되며; 단생연금과 연생연금 동시 취득가능
 - 계좌 잔고가 F\$5,000 이하이거나 영구 출국자라면 일시금이 지급됨
 - 부분 인출 : 계좌 잔고의 최대 21%까지 주택구매비용으로 인출 가능. 한 번의 인출만이 허용됨
 - 일반계좌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잔액 인출가능. 인출 목적에 따라 제한사항이 상이하며, 주택구매비용으로는 계좌 잔고의 30%까지 인출 가능
- 노령사회연금(사회연금제도(Social Pension Scheme[SPS]), 사회부조) : 월 F\$100

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적립금고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총액 + 경과이자 - (보존 및 일반 계좌에서의)이전 인출금>에 해당하는 잔액이 지급됨. 이 금액은 일시금; 단생연금 또는 연생연금; 5, 10, 15년의 기간 동안의 정기연금;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지급될 수 있음. 종신연금과 다르게, 정기연금 지급률은 나이에 따라가 아니라 기간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금고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부총액 + (보존 및 일반 계좌에서의) 경과이자 - 이전 인출금>에 해당하는 잔액이 지급됨. 이 금액은 일시금; 단생연금 또는 연생연금; 5, 10, 15년의 기간 동안의 정기연금;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지급될 수 있음. 연금형은 미망인(홀아비)만 선택 가능함
- 사망보조금(특별사망급여) : 사망자의 계좌로 사망자의 장례비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F\$2,000를 포함한 F\$8,500 지급
- 급여조정 : 특별사망급여는 매년 검토됨

7

관리운영기관

○ 피지국가적립금고 위원회(Fiji National Provident Fund Board)

- 전반적 감독 및 법령 시행
- 재정부가 지정
- <http://www.myfnpf.com.fj>

- 피지국가적립금고 위원회(Fiji National Provident Fund Board)
 - 적립금고 제도를 관리하며 보험료 징수

- 여성, 아동, 빈곤자 부양부(Ministry of Women, Children, and Poverty Alleviation)
 - 사회보장제도 관리
 - <http://www.mwcpa.gov.fj>

<2018년 ISSA 자료>